

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
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7월 04일

수 원 시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칭 : 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

사업시행구역 위치	사업시행구역 면적
장안구 연무동 11-58, 11-57, 11-8	1,267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 수 예 정 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
- 나. 준 공 예 정 일 :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
-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명칭 : 연무동 11-58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순필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60번길 45, 1층

5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가.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설	-	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무동 11-58번지 외 2필지	1,267	최초결정

나.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-	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	연무동 11-58번지 외 2필지	1,267	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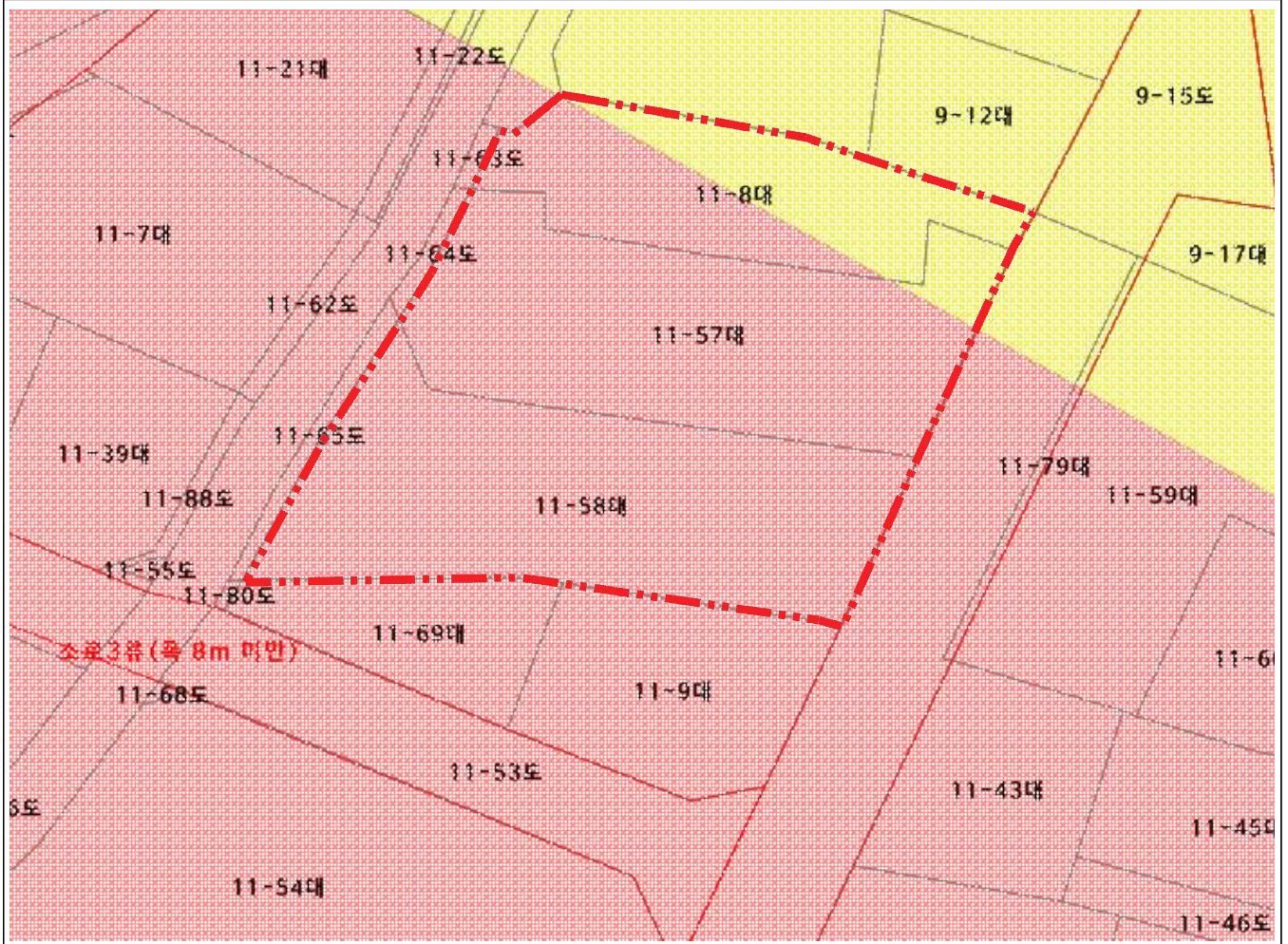
6. 기타 관계도서: 게재생략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
(<https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
도시정비과(☎031-228-339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도

(붙임)

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
-연무동 11-5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-



본 도면은 수원시 고시 제2024-303호(2024.7.4.)로
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유효함

수원시 고시 제2024-303호

2024년 7월 4일



- 사업시행구역
- 제1종일반주거지역
- 일반상업지역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	주무관 허성준	전화번호	031-228-3395
------	-------	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